

전시회 참가규정

제1조 (용어정의)

1. 전시자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주최자라 함은 개최와 관련 주최자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EXCO(엑스코)"를 말한다.
3. 전시회라 함은 "2021 경상북도 안전산업대전(Safety & Security EXPO)"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참가비(장치비를 포함한 부스비 및 부대시설비용)의 50%(부가세포함)를 계약금으로 반드시 납입하여야 한다. 잔금(납부한 계약금의 차액)은 2021년 11월 19일(금)까지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전시자의 출품예정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의 참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전시자의 참가신청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도 주최자의 판단 및 전시회의 사정에 따라 참가신청과 참가계약금 기납부액을 반렐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부스배정)

1. 주최자는 1)부스규모, 2)참가신청순(동일규모 부스 신청서)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자별 전시 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에 할당된 부스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전시장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당국으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지 않는 제품을 전시하는 경우, 또는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 게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 교환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6. 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참가비 납입 조건)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입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내에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2021. 10. 22(금)이전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의 1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 2021. 10. 22(금)부터 2021. 11. 19(금)까지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의 3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 2021. 11. 19(금)이후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의 5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제6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천재지변을 포함한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그러나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전시회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위의 사유가 아닌 전시자의 단순변심 혹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전시회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주최자는 전시회 참가규정<제5조-참가비 납입 조건>에 따라 전시자에게 참가비를 반환한다. 이에 대해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입, 진열)

전시자는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조기반출(주최자가 정한 반출 시간 이전에 반출하는 것은 불가하며, 주최자가 지정한 시간 이후에 반출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전시자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9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전시장내 인화물질 반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주최자의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단, 안전상 위험요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최자는 반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장치 및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 면적내의 전시품 및 장치물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경비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주최자의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쟁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